

배포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2026. 8.

※ 동 매뉴얼은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6.8.20. 시행), 동법 시행령(2026.8.20. 시행)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2026.8.20.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 융 정 보 분 석 원
금 융 감 독 원



목 차



I. 개 요	1
II. 신고업무 절차	4
1. 신고서 접수	5
2. 신고 심사 의뢰	6
3. 신고 요건 심사	6
4. 심사결과 통보	9
5. 신고 수리 여부 통지·공고 등	9
III. 신고 요건 심사 세부내역	9
1. 신고서류 검토	10
2. 신고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 심사	13
IV. 변경 신고	27
V. 신고의 갱신	31
VI. 신고 유지 요건	32
<붙임>	
1. 신고서 양식	34
2.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 양식	42
3. 사업추진계획서 양식	84
4. 가상자산 관련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확인서 양식 ...	87
5. ISMS 인증 관련 확인서 양식	90
6. 신고 시 거짓·미기재 사항 부존재 확인서 양식	91
7. 기타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양식	92
8. 신고요건 관련 법규	93

I 개 요

◆ 동 매뉴얼은 「특정금융정보법」(2026.8.20. 시행) 및 동법 시행령(2026.8.20. 시행), 감독규정(2026.8.20.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

1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 '가상자산의 ① 매도·매수(매매), ②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이전, ④ 보관·관리, ⑤ 매매 및 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

* “영업으로 한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대법원 98다10793, 93다54842 판결 등)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 >

- 매매·교환업, 중개업, 코인·원화거래소 등
- 보관관리업, (중앙형·수탁형) 지갑서비스업 등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에 대한 상세 설명은 “참고” 참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업무규정

참 고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

※ 개별적인 사업구조·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예시 외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항 각목의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고 평가될 시 신고 의무*가 있음에 유의

*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영위하는 경우 법 제17조(벌칙)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의 ① 매도·매수(금전으로 매매), ②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③ 이전, ④ 보관·관리, ⑤ 매매 및 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

□ 매매·교환업: ①가상자산의 매매나 ②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을 영업으로 하는 자

○ 단,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나 교환을 하는 거래소의 이용자 등은 제외(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등 참고)

□ 중개업: ⑤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업무 형태에 따라 ③이전, ④보관·관리 기능을 함께 수행)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하는 원화 및 코인거래소, 경쟁매매 방식의 시장 외에서의 개별 거래(장외거래)를 중개하는 자가 대표적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 ‘중개·알선·대행’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음에 유의

- 특정·불특정인 간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편의나 관련 수단·환경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그 실질에 따라 해당할 여지

- 타인을 위하여 또는 타인의 금전·가상자산 등을 위탁받아 매매·교환하고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도 포함될 여지(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등 참고)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예) 단순히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되는 게시판을 운영할 뿐, 당사자 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보관·관리업:** ④가상자산의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업무 형태에 따라 ③이전을 함께 수행)

○ 이용자 등 타인의 가상자산을 위·수탁하여 대신 보관하는(custody) **보관업자**가 대표적

○ 개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갑(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중앙화 지갑이나 수탁형 지갑의 형태라면 그 실질을 살펴 타인의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 신고 대상)

○ 다만, 개인키를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등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이른바 '비수탁형 지갑')는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가상자산 보관에 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설비(하드웨어 지갑 포함)의 제작·판매 등도 제외될 수 있음

<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인 관리 권한 여부 판단 기준 >

- ㉠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 사업자가 개인키를 임의로 원문 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암호화 여부 및 방식), ㉢ 이용자마다 개별적인 개인키 및 주소·지갑이 생성·부여되는지, ㉣ 개인키의 실질적인 서명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상기 조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영업성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사업자가 아님

□ **그 외:** 상기한 예시 외에도,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각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영업 형태 따라 실질의 관점에서 신고 대상 사업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당국에 사전 협의 권장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업무 개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함(법 제7조)

* 10p. <표> '필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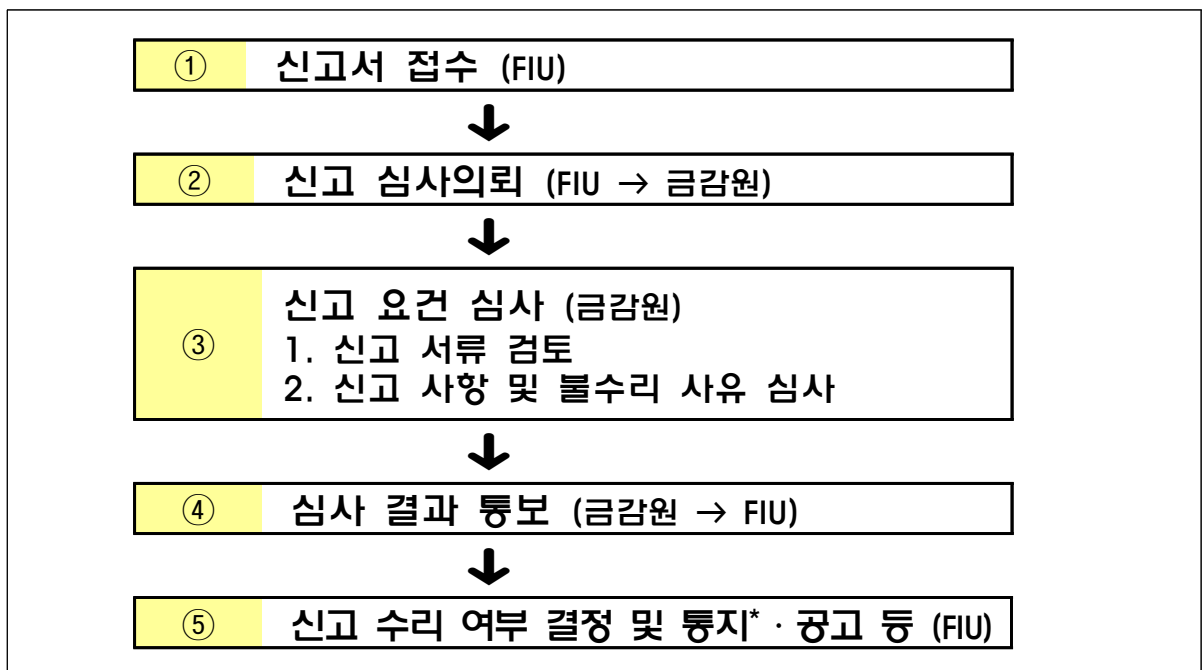
- **(주요 심사항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 요건,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II

신고업무 절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흐름도>

* 신규·변경·갱신 신고 모두 동일하게 운영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단,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신규·갱신 신고에 준하여 심사)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나, 신고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서류 보완(실지점검 기간 포함)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1

신고서 접수 (FIU)

※ 사업자는 신고서류 준비 단계에서 FIU·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메일* 등을 통해 신고서류, 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 fiureport@korea.kr / (금융감독원) amlop@fss.or.kr

※ 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취득한 후 3개월 내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신고서류 제출시 신고서류 보완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서류 등을 협의할 것을 권장

※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앞서 자신이 유통·취급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24.6.10일 배포(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을 참고하여 판단

□ 신고서 제출(법 제7조①)

-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준수(영 제10조의11, 감독규정 제27조)
- 신고인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

※ **【신고서 제출 방법】** 인터넷으로 공문을 제출하고 회신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 제출

* 수신처 및 문서 제목 : 금융정보분석원(가상자산검사과)을 지정하고 문서 제목은 가급적 '[회사명] 가상자산사업자(신규/변경/갱신 중 택일) 신고서 제출'로 표기

** 제출 전 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철저히 확인

2 신고 심사 의뢰 (FIU→금감원)

- ☐ 신고 심사 업무는 금감원장에게 위탁(영 제10조의17)되어 있으므로, FIU는 접수된 신고서의 신고 요건 심사를 의뢰하기 위해 금감원에 공문 발송
 - 금감원은 심사의뢰 공문 접수 후 심사 업무 착수

3 신고 요건 심사 (금감원)

- ☐ (1단계) 신고서류 검토
 - 법규상 필수 서류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 후 필요시 보완 요청
- ☐ (2단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확인(법 §7③1)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법 §7③2)
 - *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
 - **(법률위반이력)** 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 포함)의 법률 위반은 유관기관 등의 사실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확인(법 §7③3)
 - 신고 수리 이후라도 확인서 및 신원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 위반 사항 등이 제보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직권말소 등 사후 조치

- **(직권말소 경력)**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경과했는지 사실조회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확인 (법 §7③4)
-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신고인 제출 확인서, 재무제표 등 제출서류, 유관기관 등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확인 (법 §7③5)
- **(법령준수체계)** 신고인 제출 확인서, 제출서류, 유관기관 등의 사실조회 결과, 실지점검(필요시) 등을 통해 확인(법 §7③6)
- **(거짓·미기재)** 신고 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 불수리 또는 직권말소 등 사후 조치 가능(법 §7③7)
- **(기타)** 파산선고 후 복권 또는 6개월 이상 영업 실적* 여부는 사실조회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확인(법 §7③8)

* 법 §7①에 따른 최초 신고시에는 제외

※ 심사과정에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한 자(신고인,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 포함)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외국법인의 경우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 포함)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신고 불수리 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중인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될 수 있음(감독규정 제27조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별 해당여부 확인방법

대상	신고 불수리 요건	세부내용	확인 방법
신고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법제7조③1.)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 제출서류 등 검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법제7조③2.)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있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등 검토
	법률 위반 (법제7조③3.)	법률 위반 결격요건 (법제7조③3. 및 영 제10조의12③)	· 확인서(붙임2) · 사실조회 결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경력(법제7조③4.)	신고·변경신고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확인서(붙임2) · 사실조회 결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 (법제7조③5.)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영 [별표1] 및 감독규정 [별표2])	· 확인서(붙임2) · 제출서류 등 검토 · 사실조회 결과
	법령 준수체계 (법제7조③6.)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감독규정 [별표3])	· 제출서류 등 검토 (필요시 실지점검)
	거짓·미기재 (법제7조③7.)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거짓 또는 필요사항 미기재	· 확인서(붙임2) · 제출서류 등 검토
	그 외 기타 (법제7조③8.)	파산선고 후 미복권,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확인서(붙임2) · 사실조회 결과
대주주	법률 위반 (법제7조③3.)	법률 위반 결격요건 (법제7조③3. 및 영 제10조의12③)	· 확인서(붙임2) · 사실조회 결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 (법제7조③5.)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영 [별표1] 및 감독규정 [별표2])	· 확인서(붙임2) · 사실조회 결과
대표자 및 임원	법률 위반 (법제7조③3.)	관련 법률 위반 결격요건 (법제7조③3. 및 영 제10조의12③)	· 확인서(붙임2) · 사실조회 결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 (법제7조③5.)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영 [별표1] 및 감독규정 [별표2])	· 확인서(붙임2) · 사실조회 결과

※ 심사항목별 세부 내역은 <III. 신고요건 심사 세부내역> 참조

4 심사 결과 통보 (금감원→FIU)

- ☐ 신고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FIU에 통보

5 신고 수리 여부 결정 및 통지·공고 등 (FIU)

- ☐ FIU는 신고 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신고 수리 여부 결정
 -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FIU) 등에 공고
 - *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

III 신고 요건 심사 세부내역

[참고] 심사 세부내역 활용시 주의사항

- ☐ 본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인의 서류작성 등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포괄적인 기준으로서
 - 사업자의 업태나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의 양식과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방법, 대체 서류 제출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는 신고 이전에 금융감독원 심사 담당자와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 심사 과정에서 심사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보완요청할 수 있음

1단계

신고서류 검토

□ 구비서류 제출여부 확인

- 신고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첨부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
- 모든 첨부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및 기재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됨

<표 : 필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 기재 항목 및 구비서류	확인방법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붙임1)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실명번호, 국적, 직위, 법률위반에 따른 조치내역,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대주주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유주식수(비율), 국적,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내역,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대주주 수 ○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 건전한 재무상태 관련 사항(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 재무 현황) ○ 가상자산 관련 법령(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사항 - (조직인력)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부서장, 보고책임자, 준법감시인, 전산요원 등 현황, 독립적 감사체계, 자금세탁 방지 인력요건 충족 여부(전문자격) 등 - (전산설비) 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 위한 전산 설비 구비 현황, 보안체계, 정보처리 시스템, 출입통제, 백업 관리, 통제권, 재난 대비 안전조치, 비상계획 등	- 신고서상 내용을 모두 기재했는지 확인 - 신고서(대리인) 서명·기명날인 확인

구분	필수 기재 항목 및 구비서류	확인 방법
	자금세탁방지 시스템(STR, KYC, WLF, RBA), 가상자산법 준수 체계 관련 시스템(이상거래상시감시시스템) 구비 현황 등 포함 - (내부통제체계)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관련 내규 마련 등 내부통제체계 및 사업계획 현황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정보 ○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제27조제4항제3조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추가 기재 사항 -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국적 및 성명	
필수 기재 항목별 첨부서류		
신고인 관련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 공증받은 정관인지 여부
	○ 사업자등록증(원본)	- 해당 업종 영위 여부 등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사업장 소재지, 임원 명단 등 확인
	○ 설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결정 관련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공증 필수)
	○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
	○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 등	- 신고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 법인인감증명서	
	○ [붙임6] 및 [붙임7]의 확인서	
대표자 및 임원 관련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 국내 및 해외(국적국가 및 근무국가) 경력 모두 포함 여부
	○ 임원자격의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 [붙임2] 확인서(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신원조회 관련 서류[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유관기관 등의 사실조회 결과 - [붙임2] 확인서 제출 여부 *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가 및 근무국가의 수사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범죄 이력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대주주 관련	○ 주주 명부, 소유주식수 및 비율 ○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 ○ 대주주의 결격사유 없음에 관한 확인서	- 공증받은 주주명부인지 여부 - 대주주의 실체확인을 위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되었는지 여부 -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사실상 지배자)

구분	필수 기재 항목 및 구비서류	확인 방법
	· 최대주주 법인(주주명부, 확인서 등), 최대주주 법인의 대표자(경력, 확인서 등)도 관련 서류 제출 필요	포함,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주요 주주 등 심사대상 대주주가 모두 특정되었고, 관련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
사업추진계획서 관련	○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붙임3]: 사업추진계획서) ○ 가상자산 취급 및 관리지갑주소 목록 (사업추진계획서 내 별첨 양식 참고)	- 주요항목을 모두 기재했는지 여부 등 - 영업내용 및 방법 등이 관계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 서류 제출 여부 등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 평가 서류 ※ 금융회사등이 FIU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예) 사업자가 금융회사등에 위험평가 서류를 FIU에 제출토록 요청하여 금융회사등이 제출 등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계약서	-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세부 산정내역을 포함한 항목별 배점 등 포함 여부 - 영 제10조의12②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았는지 확인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이 발급확인必) · 신고 완료후 조건부 발급 여부 확인 - 발급 확인서상 발급요건 심사 결과 충족 여부 확인 · AML/CFT 위험 평가 결과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관리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 금융관계법률 위반 및 신고 말소 5년 미경과 여부 확인 ·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 (미제출 시) 필요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불필요 업종 여부 확인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 [붙임 2]의 확인서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첨부 - 유관기관 등의 사실조회 결과 - [붙임2] 확인서 제출 여부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관련	○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기재한 서류 ○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경력증명서, 전문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자격확인 서류, 선임자료(이사회의사록 등) 등 ○ 자금세탁방지 종사 인력: 조직 및 인력 현황표(4인 이상), 해당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 주요 AML 인력 4인에 대한 이력서	- [붙임4] 확인서 제출 여부 - 주요항목을 모두 기재했는지 등 및 증빙되어 있는지 -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전문인력의 자격, 경력증명, 근무형태 등 확인 -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구조·내부 통제의 구축·확립과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구분	필수 기재 항목 및 구비서류	확인 방법
	○ 전산요원: 전문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입증할 서류 ○ 보안체계, 정보처리 시스템, 출입 통제, 백업 관리, 통제권, 재난 대비 안전조치, 비상계획 등 ○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관련 내규 일체, 경영진·이사회 현황 ○ [붙임 4]의 확인서 및 각 항목의 적절성과 실재성을 확인할 서류 (증빙서류 및 그 목록) ○ [붙임4]의 '법령준수체계'관련 서류	-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여부 및 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 확인 - '법령준수체계'를 갖추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지(실제 작동) 등 각 세부 항목들의 적정성, 실재성 등을 평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사본) ※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확인받은 인증 범위에 관한 증빙도 함께 자료([붙임5])	- [붙임5] 확인서 제출 여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실확인 결과와 일치 여부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발급여부, 유효기간, 인증범위 및 기한내 신고여부 등 확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대주주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최대주주(본인+특수관계인)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정의하며, 특수관계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준용함

*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포함

**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 선임, 주요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2단계

신고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 심사

<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인증기관에서 ISMS 인증을 취득할 것(법 제7조③1.)

○ ISMS 인증서, 인증기관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인증 취득 내용, 유효기간* 등을 확인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 만료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 변경신고 기한 도과 등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사안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필요

-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서와 함께 ISMS 인증범위 확인서 양식(붙임5)의 신고인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금감원이 인증기관에 사실조회를 의뢰하여 확인
- 인증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ISMS 인증 사실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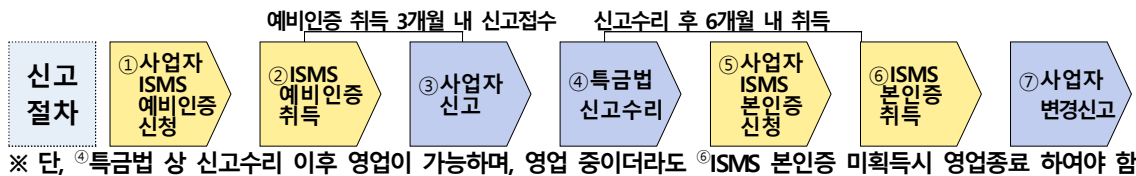
<참고>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 취득 절차

□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야 함

- (1단계) 시험환경을 구축한 후 ISMS 예비인증을 신청·취득(①,②)
- (2단계) ISMS 예비인증 취득 3개월 이내에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③)

※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신고 기한에 임박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 보완 등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를 거쳐 서류 준비할 것을 권장

- (3단계) FIU 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ISMS 본인증을 취득(④,⑤)
- (4단계) ISMS 본인증을 취득 후, FIU에 30일 이내 변경신고(⑥,⑦)



<2>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적절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은행법상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을 것(법 제7조③2.)

* 발급확인자는 보고책임자 이상, 담당자는 발급 은행의 부서장급 이상 기재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증명서를 통해 발급 내용, 유효기간* 등을 확인

* 신고 유효기간 만료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해당 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계약개시일**(예정) 30일 전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함

** 신고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완을 요청한 경우 등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통상 심사 소요기간(45일)을 초과할 수 있음을 유의(신고 수리 전 계약이 개시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

심사항목(법 제7조③2., 영 제10조의12③)

- 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불필요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확인
 -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 확인
- ②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았는지 확인
 - 신고 완료 후 조건부 발급 여부 확인

<[3] 사업자(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 포함) 법률위반이력>

- ☐ 사업자(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 포함)가 국내외 법률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법 제7조③3.)
 - 유관기관의 사실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신고 수리 이후라도 사실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 위반 사항 등이 제보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직권말소 등 사후 조치 가능

심사항목(법 제7조③3., 영 제10조의12①,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 포함)

다만,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심사항목 관련 법률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성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4〉 직권 말소 경력

☐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7조③4.)

○ 사실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확인

〈5〉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 포함)

☐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법 제7조③5.)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

심사항목(감독규정 제27조⑧ [별표 2] 제1호)

가. 자기자본 또는 출자총액*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자기자본이 0 이하인 경우 기준 미충족으로 간주)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부채총액에서 차감하여 계산

*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최근 분기말 이후 신고하려는 날까지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증감분 포함하여 계산

- 1)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보관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
-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의 미상환잔액 및 전자자금이체·전자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이하 "미정산 잔액"이라 한다)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관계법률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 포함) 등으로부터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다만,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또는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 신고의 경우는 제외.

-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포함)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

※ p.17, <참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 참고

<참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

-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⑤ 「금융사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정)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회사의
 -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 2) 조치의 원인이 된 사유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 3) 조치의 원인이 된 사유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4) 2)·3)의 제재 대상으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 2) 조치의 원인이 된 사유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 3) 조치의 원인이 된 사유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4) 2)·3)의 제재 대상으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2) 조치의 원인이 된 사유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3) 조치의 원인이 된 사유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4) 2)·3)의 제재 대상으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⑦ 「금융사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람

가. 은행인 경우 :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다. 그 밖의 경우 :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여신거래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대표자 및 임원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

심사항목(감독규정 제27조⑧ [별표 2] 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갱신신고가 된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포함)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

※ p.18, <참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 참고

<대주주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

※ 아래 구분된 대주주 종류(금융기관, 투자목적회사, 개인 등) 외의 주체(예, 조합)가 사업자의 대주주인 경우, 가장 유사한 종류의 항목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며, 사업자는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그 유사성을 주장·입증

구분	심사항목(감독규정 제27조⑧ [별표 2] 제3호)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1)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해당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나목1)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단(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분기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고, 자기자본 계산시 최근 분기말 이후 신고하려는 날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200 이하일 것 3) 다음 각각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정보 분석원장이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부실금융기관으로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해당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그 특수관계인 중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영업의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 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의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1)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200 이하일 것 3) 가목3)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는 개인인 경우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갱신 신고가 된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포함)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 ※ p.18, <참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 참고 2) 가목3)의 기준을 충족할 것
라.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국 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 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 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가목3)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와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와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1) 금융기관인 경우: 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2) 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 나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3) 내국인으로서는 개인인 경우: 다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4) 외국법인인 경우: 나목1)(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라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	---

비고

1. 영 제10조의11제2항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제3호가목3)에 따른 기준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3호마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2. 위 표 가목3) 및 나목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위 표 가목3) 및 나목3)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3) 및 나목3)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나.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3) 및 나목3)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 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사유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3)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 부채비율(법인인 대주주 포함)은 신고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그 외 사회적 신용(대주주, 대표자 및 임원 포함)은 유관기관 등의 사실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실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 위반 사항 등이 제보 등으로 확인되면 신고 불수리, 직권말소 등 사후 조치 가능

〈6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인력·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테러자금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못한 자(법 제7조③6.)
-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고 (영 제10조의12⑥1.) 해당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함(영 제10조의12⑥2.)
-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보안설비, ㉣정전·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업무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함 (영 제10조의12⑥3.)
 - * 충분한 보안 수준을 갖춘 업체로 사업자의 독립적인 접근 권한이 확보된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
-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업무의 절차·방법,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방법 등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함 (영 제10조의12⑥4.)

주요 법령 준수 사항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의심거래보고(제4조) - 독립적 감사(제5조) - 고객확인 및 위험평가(제5조의2) - 송금 시 정보제공(제5조의3)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제8조) 등	- 예치금 관리(제6조) - 가상자산 분리 및 실질 보관(제7조) - 준비금 적립·보험 가입(제8조) - 불공정거래 방지 관련(제10조) - 입출금 차단 금지(제11조) 등

□ 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통해 확인 후, ⇨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진의, 개별 심사항목의 실제성, 그 적절성 여부를 직접 조사·확인

- 인적 요건은 조직도 및 임원 등 주요 임직원의 이력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물적 요건은 계약서 및 주요 장비 사진과 시스템의 단계별 작동을 알 수 있는 추가 설명 자료를 확인
- 내부통제체계는 의무별로 마련된 사업자의 내부 규정 및 업무매뉴얼 등을 확인하고, 실제 준수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업무단계도·구조도 등을 함께 살펴봄

※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7일 전에 사업자에게 점검 기간·장소·주요점검대상 등을 통지할 예정(「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3조 등 참고)

심사항목(감독규정 제27조⑨ [별표3])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아래 1) 또는 2) 기준을 충족하는 준법감시인을 둘 것

- 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 제도이행평가 지표상 인정되는 전문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 2)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 TPAC, CAMS, KCAMS,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전문) 등

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포함)을 4명 이상*으로 확보할 것

* 사업형태, 조직규모, 인력운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AML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시 겸직 가능

다.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산요원을 둘 것

*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이제 준하는 교육 등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등(이에 준하는 자격증)

2. 조직에 관한 요건

가.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를 둘 것

나.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갖출 것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12~§16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업무규정 §13③에 따른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등 업무 담당 부서는 제외) 또는 외부전문가를 통한 독립적 감사 실시 가능]

3. 전산설비에 관한 요건

가. 자금세탁방지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 관련 전산설비를 포함한 업무관련 전산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고,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나.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다.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 시스템 관리방안이 확보되어 있을 것

라.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마. 중요도에 따른 백업정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는 데이터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분리되어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바.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산설비를 국내*에 두고 충분한 사용권한을 갖추도록 하여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실질적 장애가 없을 것

* 클라우드를 이용 시 국내 리전(region)에 위치한 경우 국내로 인정

사. 재해, 재난에 대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아. 영업종료, 개인정보유출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전산설비 및 보안시설을 갖출 것

차. 가상자산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아닌자가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설비 및 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 정보, 거래정보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것

4.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요건

가.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과 절차 등

- 1) 경영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부합할 것
- 2)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3) 경영진·이사회 또는 주요 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할 것
- 4) 전산사고 등의 방지 및 보상을 위한 절차·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것

나. 사업계획의 건전성과 타당성

-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 영,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및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부합할 것
- 2) 이사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 영,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및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

〈7 신청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필요사항 미기재〉

- ☐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법 제7조③7.)
 - 신고가 수리된 후에도 거짓이나 미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직권 말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법 제7조④1.)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도 직권 말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법 제7조④4.)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7조③8.)

* 법 §7①에 따른 최초 신고시에는 제외

- 파산선고 여부는 신고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를 통하여 확인

※ 개인과 달리 법인은 파산을 통하여 법인격이 소멸하여 복권(자격 회복)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상 파산선고 여부로 판단

- 6개월간 영업실적이 없는지와 관련해서는 사업 계속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IV 변경 신고

◆ 변경신고 누락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에 유의할 필요(법 제17조②)

※ 영업종료 사업자 : 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가상자산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3.11.21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참고)

□ (대상)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7조②)

□ (시기) 변경사항 발생일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영 제10조의11⑤, 감독규정 제27조⑤)

○ 다만, 업무범위 추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신규 발급 등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전에 신규 업무에 관한 ISMS 예비인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FIU와 변경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 포함)한 자에 대해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까지 신고 불가하므로 신중할 필요

<표 : 변경신고 사항별신고기한(예시)>

변경신고 사항	신고기한	기준
○ 국적 및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 * 법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사전 30일까지	선임·사임·퇴임일(예정)의 30일 전까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하여 선임·사임·퇴임한 날) * 부득이한 경우로 30일 전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사유 제출
○ 대주주에 관한 사항 - 국적,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 소재 국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 ※ 대주주 지위 변동이 없는 단순 지분율 변동은 제외		명의개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 법령준수체계, ISMS 인증 등의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금융당국과 협의 필요		변경한 수행 행위 개시일(예정)의 30일 전까지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개시일(예정)의 30일 전까지
○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 ※ 법령준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주요한 변경에 한함		실제 변경일(예정) 30일 전까지
○ 상호	사후 14일 이내	등기상의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업장의 소재지 *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등기상의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업장의 연락처 *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 사업장의 연락처		실제 이용일(개통·사용 등)로부터 14일 이내
○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실제 우편주소 및 도메인 사용일(대외적 게시 등)로부터 14일 이내
○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실제 점유·사용일(서버 가동일 등)로부터 14일 이내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사후 30일 이내	인증서 발급(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참고]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변경신고 범위(주요한 변경 예)

구분	변경 사항	변경 기준
조직·인력	·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변경 · 조직변경 등 회사 의사결정에 따른 AML 종사 인력의 급감*(예정) 등 * AML 종사 인력이 4명 미만(감독규정 [별표 3] 제1호나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인 경우 충원계획을 함께 제출 - AML 종사 인력을 10인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 30% 이상 급감 - AML 종사 인력을 10인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 총 인원이 3명 이하로 감소	실제 퇴사·근무시작일 등
전산설비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STR, KYC, WLF, RBA) 및 가상자산법 준수 체계 관련 시스템 (이상거래상시감시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등 - 시스템 운영 중단·재구축, 운영주체 변경(제3자 위탁, 위탁업체 변경) 등	실제 수행일 등
내부통제	· 가상자산 관련 법률, 시행령 및 규정 (감독규정, 업무규정 등) 개정에 따른 내규 변경 · 가상자산 관련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규 변경(단순 자구 수정, 용어 정비 등은 제외) 등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사업은 제외[자회사·지분투자를 통한 신규사업 포함(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주체는 해당 자회사·피투자회사)]	내규 시행일

※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의 중대한 변경이 수반된 사업의 변경(신규사업 출시 포함)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 필요 여부를 FIU·금감원과 협의할 것을 권장

☐ **(방법)**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 또는 변경 예정인 사항을 기재 하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공증 필요), 변경사항이 반영된 등기부등본, 실명계정 계약 변경의 경우 계약서 등

- **(유의) 사전 신고 사항**(대표자·임원·대주주·실명계정·법령준수체계)은 신고 수리(통보) 전에 신고 사항을 시행·실행하는 경우*, 직권 말소 사유(법 §7④)또는 법 위반(법 §17)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

* 예) 임원 변경 시 선임 30일 전까지 변경 신고 후 수리 전에 근무하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계약개시일 30일 전까지 변경 신고 후 수리 전에 해당 입출금계정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 사전 신고기한 및 신고사항의 실제 시행·실행 시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신고 또는 협의할 필요

<표 : 변경신고 사항별 구비서류(예시)>

변경신고 사항	증명서류	
<공통>	- 변경 전·후 대비표·비교설명서, 변경 배경 설명서	
○ 상호	- 사업자등록증, 공증받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공증받은 정관 등	
○ 사업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 사업자등록증, 공증받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연락처 등을 게시한 홈페이지 화면 캡처 등	
○ 국적 및 성명(대표자, 임원)	- (신고시) 대표자·임원 확인서, 경력사항(선임시) 및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신원조회 관련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 사임서(사임시) 등 [외국인 대표자·임원인 경우 범죄 이력 관련 증빙서류] - (수리된 경우 수리통보 이후) 공증받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사업자등록증(대표자 변경시), 법인등기부등본* 등	
○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신고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대주주 확인서, 경력사항, 주식양수도계약서, 계약금 지급증빙 등 [외국인 대주주의 경우 범죄 이력 관련 증빙서류] - (수리된 경우 수리통보 이후) 변경 전후 주주명부(공증본), 주식양수도계약서 최종본, 잔금 지급증빙 등	
○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에 관한 사항	조직·인력	- 보고책임자·준법감시인·전산요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인력현황표, 인사발령서 등
	전산설비	- (신고시) AML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 변경된 위탁·구축 계약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내부 품의서, 이사회 의사록 등 - (수리된 경우 수리통보 이후) 시스템 정상작동 확인가능한 캡처 화면, 검수 확인서 등

변경신고 사항	증명서류
	내부통제 - (신규사업) 사업계획서, 관련 내규 등 - (내규변경) 내규 신규 대비표, 이사회 의사록, 법령 대응표 등
○ 전자우편 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필요시 관련 계약서 등
○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소재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ISMS 인증 유효성 확인서(붙임 5)* 등 ※ ISMS 인증 심사 일정 상 부득이하게 제출이 어려운 경우 ISMS 인증 심사 계획 및 관련 보안대책 등 제출
○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 업무유형 변경신고는 신규 신고에 준하는 서류 제출 필요(10p~12p 참고)	- 이사회 의사록, ISMS 인증 관련 확인서(붙임5), 사업 추진계획서,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법령준수 체계 관련 서류 등,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 (신고시)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기존·변경 계약서, 계약내용 변경대비표, 실명계정 은행의 자금세탁 행위 위험 평가서, 실명계정 은행의 AML역량(조직, 인력, 물적시설 등) 관련 서류 - (계약개시 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및 계약서 등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에 관한 정보	- ISMS 인증서, ISMS 인증 관련 확인서(붙임5) 등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이사회 의사록, 국내 사무소 법인등기부등본*, 소재지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 캡처 등
○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국적 및 성명	- 이사회 의사록, 국내 사무소 법인등기부등본* 등

* 등기부등본의 경우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선택하여 제출

※ 위 서류는 변경신고 증명서류에 대한 예시로 심사과정에서 심사담당자가 증명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명서류의 확보 및 제출이 어려운 경우 어떤 대안적인 서류를 통하여 갈음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당국에 사전 협의

V 신고의 갱신

☐ (대상)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법 제7조⑥)

☐ (시기) 신고 유효기간(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영 제10의15②)

※ FIU는 필요한 경우 갱신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음
(법 제7조⑥, 영 제10의15③)

- **(신고 업무 범위)** 사업자는 실제 영업으로 영위하는 수행행위를 업무로 갱신신고

※ **(유의)** 특정 수행행위가 업무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갱신신고 당시 해당 업무를 영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동 수행행위를 업무로 갱신신고할 수 없음

< 신고 업무 범위 예시 >

- 사업자가 가상자산 매매·교환의 중개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영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 가상자산 매매·교환의 중개 행위만 갱신신고 가능
- 사업자가 가상자산 보관·관리, 이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그 외 업무를 영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 가상자산 보관·관리, 이전 행위만 갱신신고 가능

- **(방법)** 갱신신고서 및 신고시 구비서류(9p, 구비서류 참고) 등을 첨부하여 FIU에 제출(영 제10조의15②)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관련 자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함

VI 신고 유지 요건

-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이후에도 다음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법 제7조④, 영 제10조의13③)

※ 수리 이후에도 신고 유지 요건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자료 제출 필요

- 신고 불수리·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ISMS 인증 미획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획득, 신고인·대표자·임원·대주주의 범죄경력,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미경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및 법령준수체계 요건 미충족, 파산 또는 영업실적 여부 등

-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예시) 사업자가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상장피를 받는 경우 등

붙임 1 신고서 양식 [신규/변경/갱신]

1.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 · 갱신신고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신규 / □변경 / □갱신)																																				
① 신 고 인	명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본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신 고 사 항	②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현황 임원 수 : 총 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10%;">직위</th> <th style="width: 10%;">성명</th> <th style="width: 20%;">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등)</th> <th style="width: 10%;">국적</th> <th style="width: 20%;">대표자·임원 적합여부¹⁾</th> <th style="width: 30%;">변동내용²⁾</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2) 변경신고시에만 작성하되, 사임, 신규선임, 직위변동 등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다.						직위	성명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대표자·임원 적합여부 ¹⁾	변동내용 ²⁾																								
	직위	성명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대표자·임원 적합여부 ¹⁾	변동내용 ²⁾																														
	③ 대주주 현황¹⁾ 대주주 수 : 총 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10%;">주주명</th> <th style="width: 10%;">소유주식수²⁾ (비율)</th> <th style="width: 20%;">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th> <th style="width: 10%;">주소</th> <th style="width: 10%;">국적</th> <th style="width: 20%;">대주주 요건³⁾ 적합 여부</th> <th style="width: 30%;">변동내용⁴⁾</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하며, 대주주 변경신고시에는 취득예정 주식수와 비율을 의미한다.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4) 변경신고시에만 작성하되, 신규, 제외, 지분을 변동 등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²⁾ (비율)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국적	대주주 요건 ³⁾ 적합 여부	변동내용 ⁴⁾																							
	주주명	소유주식수 ²⁾ (비율)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국적	대주주 요건 ³⁾ 적합 여부	변동내용 ⁴⁾																													
	④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60%;">항목</th> <th style="width: 20%;">선택¹⁾(○)</th> <th style="width: 20%;">변동내용²⁾</th> </tr> </thead> <tbody> <tr> <td>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td> <td> </td> <td> </td> </tr> <tr> <td>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td> <td> </td> <td> </td> </tr> <tr> <td>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td> <td> </td> <td> </td> </tr> <tr> <td>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td> <td> </td> <td> </td> </tr> <tr> <td>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1) 복수 선택 가능 2) 변경신고시에만 작성하되, 추가, 제외 등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다.						항목	선택 ¹⁾ (○)	변동내용 ²⁾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항목	선택 ¹⁾ (○)	변동내용 ²⁾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발급확인자*	은행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발급담당자*	은행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인원수 등)	

* 발급확인자는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으로 하고 발급담당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기재

⑥ 건전한 재무상태 관련 사항 :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의 재무 현황(단위: 억원)

구 분	20 . . .	20 . . .	20 . . .	20 . . .
자산총계				
부채총계				
조정부채총계*(A)				
자본총계(B)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부채비율(A/B)				

* 별표2 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차감한 후의 부채총액을 기재한다.

⑦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조직·인력 현황(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등)

주요 내용	
-------	--

나.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현황

주요 내용	
-------	--

다.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 현황(사업계획 포함)

주요 내용	
-------	--

구 분	내 용
발급처	
유효기간	
인증번호	

금융정보분석원장 귀하

※ 다목에 따른 서류는 위험평가를 실시한 금융회사들이 FIU에 직접 제출 가능

6.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명세서
- 나. 사업자가 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구축 관련

- 가.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범위 확인서 1부

9. 기타

- 가. 신고인 · 대표자 · 임원 · 대주주 확인서

※ 변경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1. 신고서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2. 첨부서류
 - 이사회의 의사록 등 변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신고 관련 증빙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임.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 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신규·갱신 신고에 준하여 심사

2.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갱신신고서)

*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신규 / □변경 / □갱신)							
① 신 고 인	명칭(상호)				사업자식별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본점(외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국내 사업장	대표자 성명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등) :			국적 :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신 고 사 항	②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현황						
						임원 수 : 총 명	
	직위	성명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대표자·임원 적합여부 ¹⁾	변동내용 ²⁾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2) 변경신고서에만 작성하되, 사임, 신규선임, 직위변동 등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다.							
③ 대주주 현황 ¹⁾							
					대주주 수 : 총 명		
주주명	소유주식수 ²⁾ (비율)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국적	대주주 요건 ³⁾ 적합 여부	변동내용 ⁴⁾	
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하며, 대주주 변경신고서에는 취득예정 주식수와 비율을 의미한다.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4) 변경신고서에만 작성하되, 신규, 제외, 지분을 변동 등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항목				선택 ¹⁾ (○)	변동내용 ²⁾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1) 복수 선택 가능							
2) 변경신고서에만 작성하되, 추가, 제외 등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다.							

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발급확인자*	은행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발급담당자*	은행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인원수 등)	

* 발급확인자는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으로 하고 발급담당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기재

⑥ 건전한 재무상태 관련 사항 :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의 재무 현황(단위: 억원)

구 분	20 . . .	20 . . .	20 . . .	20 . . .
자산총계				
부채총계				
조정부채총계*(A)				
자본총계(B)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부채비율(A/B)				

* 별표2 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차감한 후의 부채총액을 기재한다.

⑦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조직·인력 현황(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등)

주요 내용	
-------	--

나.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현황

주요 내용	
-------	--

다.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 현황(사업계획 포함)

주요 내용	
-------	--

	⑧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	-----------------------

구 분	내 용
발급처	
유효기간	
인증번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 등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금융정보분석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인 관련
 -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1부
 - 나. 사업자등록증 1부
 -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라.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마.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 관련(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 가.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나. 대표자 및 임원이 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1부
3. 대주주(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관련(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한다)
 - 가. 등록신청일 기준 현재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나. 주주명부(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포함) 1부
 - 다.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 및 법 제2조제7호나목2) 해당 여부가 기재된 서류 및 증빙서류 1부
 - 라. 대주주가 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1부
4.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추진계획서 관련
 -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 나. 가상자산 취급 및 관리 지갑주소 목록 1부
5.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 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1부
 - 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계약서 1부
 -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한 서류(평가항목별 세부내용, 세부 산정내역을 포함한 항목별 배점 등 포함)

※ 다목에 따른 서류는 위험평가를 실시한 금융회사가 FIU에 직접 제출 가능

6.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명세서
- 나. 사업자가 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구축 관련

- 가.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범위 확인서 1부

9. 기타

- 가. 신고인 · 대표자 · 임원 · 대주주 확인서

※ 변경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1. 신고서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2. 첨부서류
 - 이사회의 의사록 등 변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신고 관련 증빙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임.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 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신규·갱신 신고에 준하여 심사

붙임 2 신고인 · 대표자 · 임원 확인서 양식

1. 신고인 확인서

가상자산사업자 확인서

확인 사항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계법률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다만,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의 경우 제외)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신 고 인 :

(인)

2.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확인서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확인서

확인 사항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속한 국가(이하, '해당 국가')로부터 「특정 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해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국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해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해당 국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해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해당 국가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법상 지위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계법률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해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다만,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의 경우 제외)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해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신 고 인 : (인)

3.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확인서

대표자 및 임원 확인서

확인 사항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 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포함)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가 된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 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규모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4. 외국인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확인서

외국인 대표자 및 임원 확인서

확인 사항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외국인이 속한 국가(이하, '해당 국가')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해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 국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해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해당 국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해당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이에 해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포함)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가 된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 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규모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5. 대주주(최대주주 본인 및 특수관계인 주주, 주요주주) 확인서

가. 금융기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제외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 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 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해당 금융기관의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200 이하일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나. 내국법인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의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는 제외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최근 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200 이하일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다. 내국인으로서 개인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포함)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가 된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규모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라.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1) 업무집행사원 등이 금융기관인 경우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해당 금융기관의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200 이하일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2) 업무집행사원 등이 내국법인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최근 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200 이하일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명 : (인)

3) 업무집행사원 등이 내국인으로서 개인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포함)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가 된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규모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4) 업무집행사원 등이 외국법인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최근 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바.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

1) 금융기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제외

대주주(최대주주 법인의 최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 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 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해당 금융기관의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200 이하일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2) 내국법인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의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는 제외

대주주(최대주주 법인의 최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최근 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200 이하일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3) 내국인으로서 개인

대주주(최대주주 법인의 최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포함)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가 된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규모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대주주(최대주주 법인의 최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 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가) 업무집행사원 등이 금융기관인 경우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주주(최대주주 법인의 최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해당 금융기관의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200 이하일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나) 업무집행사원 등이 내국법인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약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주주(최대주주 법인의 최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최근 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200 이하일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다) 업무집행사원 등이 내국인으로서 개인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약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주주(최대주주 법인의 최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포함)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가 된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규모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라) 업무집행사원 등이 외국법인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주주(최대주주 법인의 최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최근 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7]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대주주(최대주주 법인의 대표자) 확인서

확인 사항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조사·검사, 형사 소송 등이 진행중인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건개요를 첨부하여 제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 법률*과 관련하여 행정제재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첨부하여 제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포함)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만, 이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가 된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 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규모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 법률 포함)
-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 제2호의3, 제32호, 제35호, 제43호는 제외)에 따른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업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 ③ ①·②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붙임 3 사업추진계획서 양식

확인서

본인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본 사업추진계획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및 검토하였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본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X. XX. XX.

(주)XXXX 대표이사 xxx (인)

구 분		내 용
1. 회사 개요	현황	○ 상호, 설립일, 본사의 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정관상 사업의 내용
		○ 계열회사 현황(계열회사 등, 주요 사업, 지분율 등)
		○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 사업, 최직근 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근거)
		○ 주주 현황(실지명의, 보유주식수, 지분율)
	연혁	○ 회사 연혁
		○ 최대주주·경영진의 중요한 변동(최근 5년간)
2. 사업 내용		○ 현재 영위하는 사업내용(신고한 가상자산업 외 영위 중인 사업내용을 기술)
		○ 신고한 가상자산업 관련 사업계획 및 세부 추진일정 - 사업부문별 해당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영업행위, 서비스 URL 및 애플리케이션 - 사업부문별 사업방식 및 매출예상액, 수익원(수수료율)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서비스의 경쟁력 및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술
		○ 가상자산 취급(예정) 및 지갑주소 목록(별첨 양식 참고) -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관리를 위한 거래소 지갑 주소 목록 포함
3. 재무현황		○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장전망, 점유율,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등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영업개시후 수입·지출 전망의 적정성을 표현할 것
4. 임직원 현황 등		○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보고책임자, 준법감시인 포함)
		○ 조직도
		○ 임직원수(상근여부, 정규직 여부 포함)

가상자산 취급 및 관리 지갑주소 목록 양식

1. 전체 가상자산 현황(신고일 기준)

가. 총 종류수(나. + 다.) : 개

나. 고객 거래용 : 개

다. 고객 거래外 : 개

2. 가상자산 내역(신고일 기준)

[illegible]

주1) 발행기관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표기

2) 가상자산의 용도에 따라 해당하는 칸에 ○ 표기(복수 표기 가능)

3)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

4)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 관리를 위한 거래소의 지갑주소 목록

붙임 4

가상자산 관련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확인서

확인서

본인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본 기재 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및 검토한 결과, 당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1) 조직·인력, (2) 전산설비, (3) 내부통제 체계 요건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를 갖추었으며, 각 심사항목에 관한 증빙 및 관련 법령준수체계를 별도 제출합니다.

※아래 요약된 심사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규정 [별표3]을 참고해야 함.

심사항목		충족 여부*
인력	가. 적격요건·경력 및 전문성을 충족하는 준법감시인을 둘 것	
	나. 자금세탁방지 업무 종사인력 4명 이상 확보할 것	
	다. 적격요건·경력을 충족하는 전산요원을 둘 것	
조직	가.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를 둘 것	
	나.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둘 것	
전산 설비	가. 법령 준수를 위한 전산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이 충분히 검증될 것 등	
	나.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를 구축할 것	
	다.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할 것	
	라.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	
	마. 중요도에 따른 백업정책·장치를 구축하고, 자료를 분리 보관·관리할 것	
	바.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를 국내에 두고 충분한 사용권한을 갖추어 당국의 감독·검사 업무에 장애가 없을 것	
	사. 재해, 재난에 대비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아. 영업종료, 정보유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할 것	
	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전산설비 및 보안시설을 갖추 것	
	차. 사업자 소속 임직원 아닌 자가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전산설비 및 시스템의 정보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것	
내부 통제	가.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것	
	나. 사업계획 및 지배구조 등이 건전하고 타당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할 것	

*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자가 심사항목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항목에 대응하는 증빙서류의 위치를 열거한 목록(서류 제목 및 페이지 쪽수 등)을 기재한 문서를 별도 제출

202X. XX. XX.

(주)XXXX

대표이사 xxx

(인)

법령준수체계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관련법령
1. 자금세탁 방지체계 관련	○ 자금세탁방지 조직(부서) 현황(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이력사항, 임직원별 주요업무 포함) * 겸직이 있는 경우 추가 표기	특금법 §5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STR, KYC, WLF, RBA) 구축 여부[구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시스템 캡처화면, 제3자에게 위탁하여 구축시 위탁계약서등) 포함]	특금법 §5
	○ 의심거래보고 관련 : 의심거래 추출기준, 분석방법 및 의심거래 보고 절차 등	특금법 §4
	○ 트래블룰 이행계획 : 적용대상, 이행방법(관련 솔루션 가입(예정)시 가입(예정) 내역 첨부), 개인지갑 및 해외거래소 등에 대한 출금 정책 등	특금법 §6③
	○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업무 관련	특금법 §5의2
	- 고객(이용자) 신원확인, 실제소유자 확인 방법	
	- 고위험고객(정치적 주요인물, FATF지정 위험국가의 고객,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방법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방법 등	
	- 고객(이용자)의 신원확인 거부 등의 경우 거래거절 등 처리방법	
	○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보고책임자의 역할	특금법 §5 업무규정 §4~6
	○ 내부 교육 및 연수 실시계획	특금법 §5 업무규정 §7~9
	○ 직원 알기제도 절차 및 운영계획	특금법 §5 업무규정 §10~11
	○ 독립적 감사체계 운영계획	특금법 §5 업무규정 §12~16
	○ 법령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관련 자료 보존계획	특금법 §5의4 업무규정 §84~87
	○ 신규 가상자산 취급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위한 절차	특금법 §5 업무규정 §17
	○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현황 등에 대한 위험평가 기준, 위험평가 내역	특금법 §5 업무규정 §19
	○ 법 제8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 마련 여부	특금법 §8 시행령 §10의20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제한	
	- 임직원 등의 자체 플랫폼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제한	
	- 다크코인 인지 방법 및 취급제한	
	-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거래중개(오더북 공유) 제한	
	○ 위 자금세탁방지 체계 이행을 위한 내규 및 업무위수탁 계약서(업무위수탁시)	-
	○ 특금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사전·사후)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방법을 포함한 내규	특금법 §7 업무규정 §27

2. 가상자산법 준수체계 관련	○ 신고한 사업상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예치금 관리계획	가상자산법 §6
	○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및 보호 관련 내부통제체계	가상자산법 §7
	- 이용자 명부 작성·비치 계획	
	- 신고인과 이용자의 가상자산 분리·보관 계획	
	-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계획	
	-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의 외부기관에 위탁 보관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관한 정보	가상자산법 §8
	○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계획	
	○ 가상자산거래기록 생성·보존 및 파기 관련 내부 절차	가상자산법 §9
	○ 임의적 입·출금 차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가상자산법 §11
	- 입·출금 차단 사유, 통지절차 등을 포함한 내규, 시스템 등	
	- 입·출금 차단 후 보고 절차 이행계획	
	○ 이용자간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시스템 마련 여부	가상자산법 §12
	○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가상자산법 §10⑤
	-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식별·취급금지 등 거래 제한기준	
	-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처리기준	
3. 기타 이용자 보호방안 관련	○ 위 가상자산법 체계 이행을 위한 내규 및 업무위탁 계약서(업무위탁시)	-
	○ 가상자산 취급 관련 위험고지* 방법 * 화폐가 아니며, 원금손실 가능성 및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
	○ 제공 서비스 관련 각종 수수료 및 거래관련 세금 등의 고지 방안	-
	○ 고객피해보상절차 및 방법(민원, 분쟁처리절차)	-
	○ 영업종료 절차 및 이용자 보호 방법(공지절차, 고객자산 반환 절차 등 포함)	-

※ 작성요령('법령준수체계'라는 제목의 완결된 문서를 따로 제출할 것)

- 1) 각 항목의 내용을 준수할 체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내규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적시할 것(내용별로 목차 등을 구분하여 각각 서술할 것)
- 2) 관련 법령은 대표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작성 시 특금법·가상자산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신고인의 의무사항을 누락 없이 기술
- 3) 법령준수체계가 실제 작동하는지를 검토·확인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 4)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신의 유효한 법령이어야 함에 유의

붙임 5 ISMS 인증 관련 확인서 양식

ISMS 인증범위 확인서

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현황 (신고인 기재)

- 가. 업체(기관)명 :
 나. 인증번호 :
 다. 인증범위 :
 라. 유효기간 :
 마. 유지여부 :

2.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범위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명칭 ¹⁾ (신고인 기재)		ISMS 인증범위 확인 ²⁾ (KISA 기재)
서비스명	서비스 설명 및 URL	

주1) 업무범위 관련 서비스 URL 및 애플리케이션 명칭을 작성

2) 신고인이 기재한 서비스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ISMS 인증심사시 인증범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기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요구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관련하여 (주)OO사가 작성한 서비스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이 ISMS 인증범위에 포함됨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 ××. ××.

붙임 6

신고 시 거짓·미기재 사항 부존재 확인서

확인서

본인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제출하는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 등 일체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및 검토한 결과,

(1) 그 내용에 거짓이 없다는 점 및 (2) 신고에 필요하여 당사가 기재해야 할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주)XXXX

대표이사 xxx

(인)

붙임 7 기타 결격사유(대통령령) 부존재 확인서

확인서

본인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 당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8호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심사항목	충족 여부 확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해당하는 경우 사업 계속 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단, 신규신고인 경우에는 제외)	

202X. XX. XX.

(주)XXXX 대표이사 xxx (인)

붙임 8 신고요건 관련 법규

1. 신고사항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1의2.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2. 사업추진계획서

3.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4.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5.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 및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법 제7조제1항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③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주주(같은 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12에서 같다)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 그 밖에 대주주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3.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4.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된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된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0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2. 최근 6개월 동안의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갱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그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신고를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② 영 제10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 영 제10조의11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같은 조 제5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 및 영 제10조의15제2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갱신신고서)를 말한다.

③ 영 제10조의11제1항제8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주주명부(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영 제10조의11제2항제1호의 자는 최대주주인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현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 및 법 제2조제7호나목2) 해당 여부에 관한 자료

- 다. 영 제10조의11제2항제2호의 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2. 가상자산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가 법 제7조제3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
- ④ 영 제10조의11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대주주의 실지 명의 및 주식보유현황, 국적, 주소 또는 소재지를 말한다.
- ⑤ 영 제10조의11제4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행위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2.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3.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나.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국적 및 성명
4. 삭제
5. 법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에 관한 정보
6.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 ⑥ 영 제10조의11제5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
 - 나. 영 제10조의11제2항제1호 또는 제4항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다. 영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 라. 영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마. 삭제
 - 바. 삭제
 2. 제4항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 ⑦ 영 제10조의12제2항제2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 ⑧ 영 제10조의12제4항 별표 1에 따른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⑨ 영 제10조의12제6항 각 호에 따른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불수리 요건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시설을 갖추는 것 제10조의18(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할 것 3. 법 제8조 및 이 영 제10조의20제1호에 따라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② 금융회사등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④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법률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3의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3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의4. 「조세범 처벌법」 3의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외국환거래법」 4의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률(제1호·제2호의3·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 7. 삭제 8. 삭제

라. 직권말소 경력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⑤ 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바. 법령준수체계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⑥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⑦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지 않은 자 2. 제1호에 따른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지 않은 자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자 가.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4.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업무의 절차·방법,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등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사. 거짓·미기재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아. 기타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⑧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최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자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갱신 신고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